



## 환경관리 질의응답

### 저수조 청소업

**Q** 저수조 청소업에 인력 조건에 보면 위생관련학과 졸업자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치위생학과나 식품위생학과 등 위생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모든학과 졸업자가 다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절차도 좀 가르쳐주세요.

**A**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저수조 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장비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적합할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으며, 동 청소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생관련학과 졸업자는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미생물학, 위생화학을 이수하는 학과를 뜻하는 것으로서, 치위생학과 등을 졸업하였더라도 상기의 해당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위생관련 학과 졸업자에 포함되며, 이 경우 해당과목을 이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유독물 저장시설의 기준

**Q** 1m<sup>3</sup>와 10m<sup>3</sup>의 유독물 저장탱크가 있어 방호벽을 설치하려 하는데 각각 유독물 저장시설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나요? 몇 m<sup>3</sup>부터 방호벽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A** '유독물 영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방류벽 등은 저장시설의 주변에 설치하여 유독물 누출 사고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m<sup>3</sup>와 10m<sup>3</sup>의 유독물 저장탱크에 각각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류벽의 내용량(m<sup>3</sup>)은 가급적 방류벽내 유독물 저장량의 10% 이상과 용량이 최대인 저장탱크의

용량중에서 큰용량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악취측정대행기관

**Q** 악취지정기관으로 승인받기위한 구비서류와 악취측정기관으로 승인받기위한 구비서류가 같은 형식인지 문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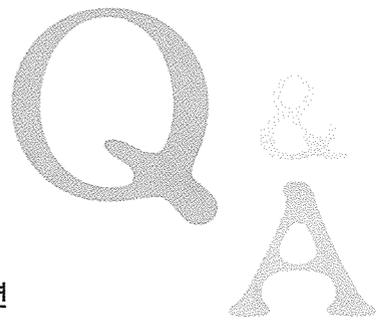
**A** 악취검사기관은 악취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사업장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이 지정하고 있으며, 악취측정대행업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것으로 각각의 법률에 따라 구비서류 등이 다릅니다.

### 순환수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Q** 검찰에서 지난 3월에 지도 단속이 나와 두 종류의 물을 채수하였고 하나는 방류수이고 하나는 이온교환수지를 통해 재이용만하는 물이었습니다.

방류수는 배출허용기준이내였으나 재이용수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었습니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증인은 재이용수도 방류시설이 되어 있다면 언제나 배출허용기준이내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채수 당시 이온교환수지를 통해 재이용되는 재이용수는 방류가 아닌 재이용 중이었으며 방류가 되지도 않는 물을 강제로 배출시켜 채수하여 배출허용기준이 넘었으며 그로 인해 비정상 가동이라고 검찰에서 주장을 하는데 재이용만하는 순환수가 언제나 배출허용기준이내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배출시설의 공정수로 사용하는 것은 폐수의 재이용에 해당되며,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로서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면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 분석 실험실에서의 유독물 사용

**Q** 현재 저희는 BF3 가스를 저장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용 실험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용량 및 저장은 최대 1kg이하입니다.

유독물 관리법 24조 22항을 준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2조 시행령11조의 면제조항에 들어, 관계기관에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 및 허가 득이 필요시 관계기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제12조제2호에 의거 시험연구용으로 또는 검사용으로 판매·보관·운반·사용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2조에 의거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위탁폐수저장조 악취배출시설 해당

**Q**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악취방지법에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은 해당 없고,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되며 안산시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발생 폐수를 위탁처리하기 위한 위탁폐수 저장조가 폐수 배출시설로 구분되는지 아니면,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구분되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에 해당되는 바,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기 위한 위탁폐수저장조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기 위한 폐수저장 시설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악취방지법 관련

**Q** 질의1) 악취방지법 제14조의 개선권고 등에서 악취 관리지역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만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악취배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취만 발생된다면 개선권고 대상 사업장이 되는지요?

질의2) 만약에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도 해당사항이 된다면 악취배출시설을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A** 질의 1, 2에 대하여) 악취방지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악취배출시설은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악취를 다량 배출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를 관리하여 악취피해를 저감 등을 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처리장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지요?

**Q** 위에 시공업(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을 하기위해서는 자격요건 중에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자가 필요한데요. 이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각종 오·폐수·중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일체를(처리시설내 전기공사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의 의거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해당 시·군·구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



## 환경관리 질의응답

노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수처리시설 등을 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기준 등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인력 경력인정 건

**Q** 94년도에 대기기사를 취득하여 1년간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사업부에 근무하였고, 6년간 건설회사 축산폐수시설 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위 자가 대기방지시설업 대기기술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기존 환경청에 기술인력으로 등재가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A**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후 대기오염방지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기관리기술사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부서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대기오염방지분야 근무경력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위 자는 대기관리기술사 대체기술인력으로 선임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 친환경상품의무구매제도와 관련

**Q** 2005. 7. 1자 시행되는 친환경상품의무구매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100% 의무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제품의 질이 현저히 낮거나 기한내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일반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1)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무구매제도를 무시하고 일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귀 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공공기관이 의무구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적 근거와 강행성있는 어떠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질의2)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가 예상될 경우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권고 또는 구매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는지

질의3) 공공기관에서 이미 친환경경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일반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귀 부에서 시정 또는 향후에 친환경경상품을 구매하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A** 질의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이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질의2) 또한,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업무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의무구매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을 강제하게 됩니다.

질의3)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상품 안내서 송부 및 교육 등을 통해 전반적인 친환경상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공공기관의 특정구매에 대해 개별 안내공문을 매번 발송하는 것은 업무 부담가중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폐기물처리방법

**Q**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기름성분이 5%이상 함유되었다면 처리방법에 있어서 지정폐기물허가받은 업체의 영업대상폐기물중 공정오니로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A** 가.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해당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2)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의 공정오니는 환경부 고시 제



1999-142호('99.9.10)에서 규정한「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수분함량 95%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 이상인 오니의 경우에만 지정폐기물 중 공정오니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권역내에서의 개발행위

**Q** 1권역내에 농지가 있어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던 중 97년 9월 이전 분할된 필지는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2005년도에 필지분할(660㎡)이 되는 것은 허가가 불가하며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를 해야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권역에서 농지를 취득(매매)할 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A**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별표3]에 의한 현지거주 요건은 토지의 필지분할시점이 '97. 9. 30일 이전일 경우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97. 9. 30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는 외지인도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05년에 분할된 토지는 6개월 이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I 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 고시에서는 농지의 취득(매매)을 위한 조건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7항 의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 기능여부

**Q**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된 회사입니다. 등록된 건설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7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된 자는 이법 제1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여 “바이오 매스” 사업을 하고자합니다.

질의 1) 상기 법률 제38조 7항에 의거 회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으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는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업무내용이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의 예시로 환경시설공사가 열거 되어 있습니다.

질의 2) 바이오 매스사업을 위한 설계 시설공사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가능한지?

**A**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등록된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설계·시공할 수 있으며, “바이오 매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나 오수·분뇨·축산폐수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내지 7조에서 규정하는 처리방법을 활용하여 축산폐수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부착여부

**Q**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관련 방지시설작동시 기록하는 적산전력계설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환경관리 질의응답

질의 1) 배출시설에 적산전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동일한 설비로 가동되면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3)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시 배출시설 적산전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수치를 적는 것인지?

**A** 질의 1) 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를 설치토록 하는 것임.

질의 2) 동일전원을 사용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동시에 연동가동하는 시스템의 경우 설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질의 3)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을 기재해야 함.

###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에 대한

**Q** 폐사는 방지시설업 등록 업체로서 환경신기술 및 건교부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도처리 공법 보유사입니다. 그동안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사업이 활발함에 따라 신기술을 이용하여 중·대형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에 2000년부터 공법을 적용하였고 매년 적용실적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으로 폐사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방지시설업에 해당되는 기초시설에는 최근 2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2005년 7월 경기도로부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오·폐수 및 분뇨, 축산폐수가 아닌 하수처리장에는 별도의 등록면허가 요구되고 있지 않으므로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에 적용된 실적을 방지시설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A** 수질분야 방지시설업의 영업실적이라 함은 폐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실적을 일컫으며, 수질분야 방지시설업체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

을 설계·시공한 경우도 상기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유해물질질의 배출기준

**Q**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이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규제받는 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을 강력하게 규제받는 시설에서 적절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을 하는 경우의 규제는 배출허용기준인지 아니면 유효측정농도인지요?

**A**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폐수량이 0.01m<sup>3</sup>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야 하므로 무단배출시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정된 법규에 의한 다이옥신 측정주기

**Q** 개정된(2004. 8. 11) 폐기물관리법 내용 중 다이옥신 측정주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1997. 4. 1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완료한 처리능력 2.5톤/시간(60톤/일)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다이옥신 측정을 2004. 11. 22 측정하였고, 2005. 3. 29 측정하였는데, 다음측정일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최초 다이옥신 측정은 사용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사의 경우 '05. 3. 29일 1회 다이옥신을 측정하였다면 다음 측정일은 '05. 3. 29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측정하면 됩니다.



## 자가점검 물질의 구분

**Q** 배출구에서 특정유해물질(염화수소)과 일반물질(먼지·황산화물)배출될 경우 자가점검횟수는 배출구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항목별로 해야하는지?

ㄱ. 1종배출구-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이 합계가 1종 배출구이어서 주 1회 각각 검사하고 있습니다.

ㄴ. 특정유해물질은 종별산출에 들어가지 않으며 먼지와 황산화물만 산출한 경우 각각은 오염물질이 4종배출구에 해당됩니다. 특정 유해물질배출구이므로 월 2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1조[별표11]규정에 의거 대기배출구의 종별에 따른 오염물질 항목별로 자가측정횟수를 적용해야 함.

다만, 대기4, 5종 배출구에서 배출하는 특정유해물질은 각 항목별로 3종의 자가 측정횟수를 준수해야 함.

## 유독물 탱크에서 IEAK 발생시 처리방법

**Q** 독물 탱크 저장소에 방호벽을 설치하고 우수로를 만들어 저장소의 기능을 갖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유독물 Leak 발생시 pH가 2이하일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데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우수관로에 밸브를 달아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도 되는지요? 인허가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는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미만인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한 유독물 Leak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할 경우 희석처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현장에서 측정가능한 오염물질

**Q**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오염물질을 정해놓았는데, NOx, SO2등을 형식승인을 득한 대기배출가스측정기로 측정을 해도 무방한지요?

대기오염공정시험법에는 형식승인을 득한 대기배출가스측정기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오염물질을 별도로 규정해 놓았는데 측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혼돈이 생겨 질의 합니다. THC는 현장에서 측정가능한지요? 대기공정시험법에는 측정가능하나 대기보전법에는 현장측정항목에 빠져있습니다. 대기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4호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오염물질의 정확한 법령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A**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로서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측정가능한 오염물질이 규정된 사항으로 해당 배출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항목에 한하여 현장에서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에 THC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항목이 아닌바,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측정가능한 오염물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홈페이지는 [www.keef.or.kr](http://www.keef.or.kr) 입니다.